

제286회 정례회
성 북 구 의 회

의안
번호 제41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 병 곤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 414 호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제 출 일 : 2021. 11. 10.
- 회 부 일 : 2021. 11. 10.

2. 제안이유

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 7. 13. 시행됨에 따라, 기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 제2조)

나. 지방보조사업¹⁾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3조)

- 법 제5조제2항²⁾에 의거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1) 제2조(정의)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2)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요시책 수행 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³⁾ 공모 (안 제4조)

○ 법 제7조제2항⁴⁾

라.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안 제5조)

○ 법 제12조제1항제4호⁵⁾에 의거 조례로 규정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중요사항의 보고 : 법 제21조제1항⁶⁾

- 3) 제2조(정의)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6)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시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⁷⁾

바.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안 제7조) : 법 제22조제4항⁸⁾

사.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와 지급의 제한, 지급신청의 종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법 제25조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20조)

○ 법 제26조제1항¹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8) 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9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9)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라. 입법예고 : 2021. 9. 30. ~ 10. 20.(20일)

- 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정합성 유지와 법적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